



#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본 연합회 •

## 미국

### 연방법무부, 이동통신사간의 기업결합에 자산 매각 요구

연방법무부는 Cingular Wireless사가 AT&T Wireless사의 4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13개 시장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조정안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커넥티컷주, 조지아주, 캔스اس주 등에서 자산 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 Cingular사와 AT&T Wireless사의 기업결합은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요금인상과 소비자를 위한 혁신의 감소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연방법무부는 말했다. 연방법무부는 또한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새로운 브로드밴드 데이터 서비스의 출범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이번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동시에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경쟁으로 인한 이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자산 매각 없이는,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전화 서비스에서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며,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위험도 있고, 새로운 초고속 무선 데이터 서비스에 있어서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연방거래위원회(FCC)의 검토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방법무부는 그동안 FCC와 공조하여 조사를 벌여왔다.

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Cingular사와 AT&T Wireless사는 현재 미국 내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사업자 중의 두 개 사업자이며, 미국 전역에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음성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은 10개의 이동

통신서비스 시장과 3개의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0개 중 9개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Cingular사와 AT&T Wireless사는 최대 규모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결합기업이 탄생하는 경우 10개의 시장 모두에서 제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조정안에는 결합기업은 반드시 커넥티컷, 켄터키, 오클라호마 및 텍사스의 일부 지역들에서 AT&T Wireless의 이동통신 서비스 부문을 매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경우 커넥티컷, 켄터키 및 텍사스에서 결합기업은 AT&T Wireless사의 주파수를 남겨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법무부는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서비스와 관련된 경쟁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결합기업으로 하여금 미시간, 테네시 및 텍사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PCS 주파수 10MHz를 매각하도록 했다.

Cingular사는 미국에서 무선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위 사업자이며, 애틀란타에 본사를 두고 있다. 2천 4백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해 약 155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AT&T Wireless사는 미국내 제3위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워싱턴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 2001년 AT&T사로부터 분리되었고, 2004년 8월 현재 2천 2백만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약 166억의 수익을 달성한 바 있다.

터니법(Tunney Act)에 따라 조정안은 연방 관보를 통해 공표되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독점금지국 통신·방송집행부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6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동의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04. 10. 25. 연방법무부

## 독점금지국, 기업결합을 위한 가이드 공표

Hewitt Pate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은 “기업결합을 위한 독점금지국 정책 가이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결합에 대한 독점금지국의 정책과 이러한 정책들의 기반이 되는 법적 및 경제적 토대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가이드에서는 사업자, 경쟁법 전문 변호사 및 경제전문가들이 기업결합

사건들에 있어서 기업결합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법적 및 경제적 원칙들에 충실한 건전한 기업결합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독점금지법/정책의 집행이 될 것이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또한 그는 “어느 기업결합이 한번 경쟁제한적으로 결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독점금지국은 시장에서 경쟁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방안을 찾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가이드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기본원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물리적 또는 무형의 자산 매각을 포함한 구조적 구제방안이 행태적 구제방안보다 낫다. 행태적 구제방안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유용하다.
- 자산 매각은 무형의 자산을 포함하여 장래에 효과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 사업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즉, 제품의 생산이나 유통에 필요한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일부 매각보다 낫다.
- 어느 기업결합이 위법이라고 독점금지국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독점금지국은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대신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쟁의 폐해가 제거되는 대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당사자들의 기업결합행위를 막을 계획이

다. “기업결합 구제 가이드는 기업 결합 구제와 관련된 법적 및 경제적 이슈들을 보다 신속하게 확정하는데에 필요한 틀을 제공한다”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2004. 10. 21. 연방법무부

## Infineon Technologies AG, DRAM의 가격카르텔에 참가한 것에 대해 유죄답변을 함

동시에 1억 6천만 달러라는 반트레스트 사상 3번째로 고액의 벌금 지불에도 동의했다.

독일의 dynamic random access memory(DRAM)(역주 : 반도체 기억소자의 하나)의 제조업자인 Infineon Technologies AG(Infineon)가 DRAM 시장의 가격을 고정하는 국제적인 공모에 참가한 것에 대해 유죄의 답변과 1억 6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다고 법무부는 공표했다.

DRAM은 컴퓨터, 전기통신 및 소비자용 전기제품 각종의 전자정보의 고속접속 및 회수를 가능하게 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제품이다. DRAM은 PC, LAPTOP, 워크스테이션, 서버, 프린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PDA, 모뎀, 휴대전화, 전기통신 협보와 router,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와 텔레비전, 디지털 셋톱박스, 게임기, MP3 디지

털 뮤직 플레이어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DRAM 시장의 년간 매출은 50억 달러 이상이다.

금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의하면 1999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15일에 걸쳐 Infineon은 DRAM의 제조업자(이름은 비공표)와 공모하여 특정의 컴퓨터 및 서버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DRAM의 가격고정을 하였다. 유죄의 답변(이것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함)에서 Infineon은 그 밖의 DRAM 제조업자에 대한 정부에 의한 계속중의 심사에 협력할 것에 동의했다.

「본 건은 하이테크 가격카르텔도 묵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과거 3년간 법무부 사건 중에서 최고액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이 이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력적인 반트러스트 집행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 우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해를 입히는 위법한 가격 카르텔의 추구(追求)에 주력하고 있다.」고 John Ashcroft 법무부 장관은 언급했다.

당해 가격카르텔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은 컴퓨터 제조업자는 Dell Inc., Compaq Computer Corporation, Hewlett-Packard Company, Apple Computer Inc.,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및 Gateway Inc.이다.

「금일 제소 및 그 결과로서의 유죄

의 답변은 미국 소비자에게 해를 입히는 카르텔을 파괴하여 소추한다는 법무부에 의한 계속중인 투쟁에서의 중요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R. Hewitt Pate 국장은 언급했다. 「본 건은 미국 경제의 중요분야의 하나인 하이테크 제조업자에 대하여 반트러스트 집행을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nfineon은 이하의 공모를 행한 것으로 제소되었다.

- 미국과 그 밖의 나라에서 경쟁업자와 특정 고객에게 판매할 DRAM의 가격에 대하여 의논하기 위해 회합, 학합 및 연락에 참가
- 이러한 회합, 학합 및 연락중에 특정 고객에게 판매할 DRAM에 일정 수준의 가격을 매기는 것에 동의
- 도달한 합의에 따른 가격견적 분량을 작성
- 합의된 가격의 업수를 감사 및 강요 할 목적으로 특정 고객의 DRAM의 판매에 대해 정보교환

「Infineon은 DRAM 업계에 대한 우리의 계속중인 반트러스트 위반 심사에 있어서 가격카르텔에 대한 유죄의 답변에 동의한 최초의 기업이다.」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James Griffin 형사집행담당 차장은 언급했다. 「Infineon의 벌금은 반트러스트국 중에서 사상 3번째로 고액인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Infineon이 금후 우리의 DRAM 업계에 대한 심사에 대하여 유익한 협력을 행할 것이다.」

2003년 12월 17일, 법무부는 Micron Technology Inc.(Micron)의 지역판매 매니저였던 Alfred P. Censullo를 DRAM 시장의 피의(被疑) 가격카르텔 심사를 방해한 것으로 소추했다. 2004년 1월 21일 법무부의 계속중인 심사 중에서 최초로 소추된 인물인 Censullo는 제소에 대하여 유죄의 답변을 하고, 2002년 6월에 대배심에 의한 문서제출영장에 대하여 문서의 은닉 및 바꿔치기 한 것을 인정했다. Censullo에 대한 양형은 금년 후반에 선고될 예정이다.

Infineon Technology AG는 서면법 제1조 위반으로 제소되고, 2004년 6월 22일 이전에 일어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년의 금고형 및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법정의 벌금상한액은 다음의 금액중 어느 쪽이든 법정상한액을 넘는 경우는 범죄에 의해 공모자가 얻은 이익의 2배액 또는 범죄에 의해 피해자에게 일어난 손실의 2배액까지 인상될 수 있다.

금일의 제소는 반트러스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사무소 및 샌프란시스코 FBI에 의한 계속중인 심사의 결과이다.

DRAM 업계에 있어서 가격카르텔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트러스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사무소 또는 샌프란시스코 FBI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

2004. 9. 15.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문

## EU위원회, Flextronics사의 Nortel 사제조부문 인수 승인

EU위원회는 Flextronics사가 Nortel사의 설비자산, 종업원 및 관련 공급망 중의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양사는 또한 앞으로 4년간 Flextronics사가 요구하는 제품 생산을 Nortel사가 생산하기로 하는 이웃 소싱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건 기업결합은 싱가폴에 본사를 두고 OEM방식으로 주로 전자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제조 및 서비스를 전담하는 세계적인 생산전담회사(이하 EMS)인 Flextronics 사가 유무선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데이터, 음성 및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제품 생산과 서비스 활동을 하는 Nortel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란 전자 분야의 신제품 개발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일 목적으로 200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생산방식으로, 주로 전자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제조 및 서비스를 전담하는 생산전담회사를 말한다. 2000년 12월, 다국적 기업인 모토롤라가 주력사업인 휴대전화 제조공장의 문을 닫고 이웃소싱을 발표한 것

도 EMS에 해당한다.

EMS는 OEM 방식으로 전자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제품 디자인, 부품 선정 및 조달, 생산, 조립, 테스트, 유통 등 매우 폭넓은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가전, 통신, 컴퓨터, 의료 및 자동차 산업 등에서 OEM의 방식으로 이웃소싱 되고 있다.

OEM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EMS 시장은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 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M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이웃소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제품 제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Flextronics사에 따르면, 상품시장은 적어도 OEM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EMS로 정해져야 한다고 한다. 상이한 전자제품들도 유사한 제조 공정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EU위원회의 입장에 따르면, EMS는 특정 전자제품별로 그 시장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리적 시장은 적어도 유럽경제지역으로 확정된다.

EU위원회는 관련시장 확정과는 무관하게, 이번 기업결합이 어떠한 경쟁상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Flextronics사가 OEM 방식에 의한 EMS 시장 전반적으로는 선도적인 기업이 될 것이지만, 보다 좀 더 나눈 시장들 중 일부 부문, 특히 통신부문에서는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들에서는 Solelectron, Sanmina 및 Foxconn들과 같은 만만치 않은 경쟁사들이 이미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4. 10. 29. EU위원회

## EU위원회, Oracle사의 PeopleSoft사 인수 승인

EU위원회는 Oracle사가 PeopleSoft사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들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작에 있어서 라이벌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다. 위원회는 세부적인 조사를 끝냈는데, 이에 따르면 다방면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들은 자신들의 재정관리 시스템이나 인사관리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Oracle, PeopleSoft 및 SAP AG 이외의 독자적인 공급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3년 6월에 전세계적으로 제2위의 지위에 있는 Oracle사는 경쟁사인 PeopleSoft의 인수를 위한 입찰에 참가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EU 기업결합규제규칙에 따라 지난 2003년 10월에 신고되었으며, 동시에 미국 연방법무부에서도 조사절차

에 들어갔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재정 및 인사와 같은 사업상 중요한 문제들을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의 다국적 기업에서는 각국의 자사들을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U위원회는 재무관리 및 인사관리를 하는 대규모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독립된 소프트웨어 시장이 별도로 있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산업계에서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또는 '통합 소프트웨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바 소프트웨어 '중간시장(mid-market)'과는 구별되는 시장이다. EU위원회는 또한 이 시장은 지리적으로 전세계를 관련시장으로 있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비록 신고된 기업결합이 대규모 사업자의 수를 셋에서 둘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지만, 시장에서 여전히 최대규모 사업자인 SAP사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경쟁이 유지될 것으로 결론내렸다. 통상 고객들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입찰 프로젝트에 다양한 공급업체들을 불러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입찰에서 Lawson, IFS, Intentia 또는 QAD와 같은 업체들이 Oracle, PeopleSoft 및 SAP와 같은 경쟁사들을 제치고 사업권을 획득하기도 한다는 사실도 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제까지는 주로 중간시장에서 사업활동을 하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근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어, 이 시장에서 경쟁 제한을 방지하는 기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기업들에서 발주하는 수백 건의 재무시스템 및 인사관리시스템 입찰 과정을 분석한 후 이와 같은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Oracle사의 입찰 행태가 입찰 경쟁에 있어서 특정 발주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추론해 내기도 했다. 즉, PeopleSoft나 SAP가 경쟁사로서 존재한다고 해서, Oracle사와 다른 입찰자가 경쟁하는 경우 낙찰가격이 더욱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제품의 이질성, 사업자간 시장점유율의 비대칭성 및 가격 투명성의 결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외의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EU위원회는 미국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과 협조하여 이번 사건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증거로서 채택되었다.

2004. 10. 26. EU위원회

### **유럽제1심법원, WorldCom과 Sprint의 합병을 금지하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취소**

사실의 실체를 판단함이 없이 유럽

제1심법원은 관계사업자가 유럽위원회에 신고한 합병계획을 중지한 후에는 유럽위원회는 더 이상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지했다.

2000년 1월 10일 미국 전기통신 회사 WorldCom(현재 명칭은 MCI)과 Sprint는 양 사가 전사업을 합병할 의향이 있다는 합의에 대해 유럽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다. 당해 합병은 Sprint 주식과 WorldCom 주식을 교환하는 형태로 행해졌고, 당초 1,270억 달러의 평가액이었다.

미국 경쟁당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위원회는 Sprint가 인터넷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확약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본 거래는 EU 수준의 범위를 가지며 「상위단계의 인터넷 접속」 시장 및 다국적 기업으로의 글로벌 한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시장에 있어서 지배적 지위의 창출 또는 WorldCom의 지배적지위의 강화에 관련되는 관점에서 본 합병계획에 반대하였다.

2000년 6월 26일 유럽위원회 Mario Monti 경쟁담당 위원은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법무부의 대표자와 회담을 하였다. 회담 후 기자회견장에서 Monti 위원은 합병금지를 유럽 위원회에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2000년 6월 27일 WorldCom과 Sprint는 유럽위원회에 대한 서한 중에서 양사는 신고를 철회하고, 신고 서에 기재한 형태로 합병계획을 수행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식으로 언급하였다.

2000년 6월 28일 유럽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합병이 EU조약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뜻을 선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본질적으로 2000년 6월 27일 관계 기업의 서한이 2000년 1월 10일에 신고한 「합병 합의의 정식적 철회」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WorldCom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유럽제1심법원에 제소하였다.

소송절차는 WorldCom이 미국 판례 제11장의 보호하에 놓이게 되는 사건에 따라 정지하였다. 관할권을 가지는 미국 법원이 WorldCom의 재건을 승인한 후 통상의 절차가 재개되었다.

#### 유럽위원회의 결정채택권한

2000년 6월 27일에 WorldCom과 Sprint가 유럽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은 원칙적으로 합병의 의견 또는 제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에 기재된 형태의 합병 제안을 포기하는, 즉 신고된 합병 합의에 의해 구상된 형태로의 제안의 중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유럽제1심법원은 인정했다. 같은 날에 미국에서 양 사업자가 한 기자발표에서도 당시 WorldCom과 Sprint는 여전히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합병을 행할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실 양사가 실제로 합병계획을 중지할 것을 공표

한 것은 2000년 7월 13일에 행해진 기자발표에서였다.

그러나 유럽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될 수 있는 합병 합의는 2개 사업자 사이에서 단지 합병을 고려하고 있다(또는 합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존재하는(존재가 계속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럽위원회의 권한은 단지 사업자간의 주관적인 의도에 기인해서는 안 된다. 합병 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유럽위원회가 합병을 금지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관계사업자가 수정한 형태로 합의를 체결할 생각을 가지고 교섭을 계속한 경우에도 유럽위원회는 합의가 종지되는 즉시 권한을 잃게 된다. 때문에 본 건에 있어서 유럽위원회는 더 이상 결정을 채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했다.

여하튼 유럽제1심법원은 합병 사안에 관한 절차에 있어 실체에 대한 결정 없이 사안을 종결시키기 위해 관계사업자가 단지 신고를 철회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며, 유럽위원회의 화해 관행은 관계사업자에게 유럽위원회의 관점에서는 신고의 철회는 사실상 합병계획의 포기와 동등하게 보여진다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WorldCom과 Sprint에는 유럽위원회의 지금까지의 행정적 관행에 비추어 2000년 6월

27일 서한을 가지고서 신고가 종결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자격이 있다. 그 때문에 유럽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가 그들의 서한은 신고의 종료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그들에게 먼저 통지하지 않고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적어도 WorldCom과 Sprint 양사의 정당한 기대를 깨뜨렸다는 점을 지지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최소하였다.

2004. 9. 28. 유럽사법법원 발표문

#### 유럽위원회, 동배관(銅配管) 카르텔에 참가한 기업에게 제재금 부과

유럽위원회는 최장 12년간에 걸쳐 유럽 시장에 있어서 수도, 난방 및 가스용 배관의 카르텔을 행한 기업에 대하여 합계 2억 2,230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한 기업으로는 Boliden 그룹(스웨덴), Halcor S.A.(그리스), HME Nederland BV, the IMI 그룹(영국), Mueller Industries, Inc.(미국, 영국 및 프랑스), Outokumpu(핀란드) 및 Wieland Werke AG(독일)이다. 금일의 결정으로 1999년 10월의 빌족이래 현행 위원회가 유럽연합에서 반트러스트 위반에 대해 부과한 제재금 총액은 45억 5,000만 유로였다.

「기업의 위법한 행위로 유럽의 소

비자는 배관의 교환시 또는 집 구입 시에 건전한 경쟁력이 기능하고 있는 경우보다도 많은 금액을 지불하였다. 금일의 결정은 현행 위원회에 의한 카르텔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을 재차 예증하는 것이다」고 Mario Monti 경쟁당국 위원은 언급했다.

위원회는 가정 및 빌딩에 사용되는 수도, 난방 및 가스용 동배관의 주요 제조업자가 1988년 6월부터 2001년 3월에 걸쳐서 유럽경제지역(EEA)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카르텔을 행하고, 경쟁제한적인 사업활동을 금지하는 유럽조약 및 EEA 협정(각 제81조, 제53조)에 명확히 위반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당해 시장의 가치는 카르텔의 맨 마지막 해인 2000년에 11.5억 유로였다.

위원회는 카르텔 존재를 최초로 폭로한 기업은 제재금을 면할 수 있다 고 하는 1996년 leniency 고시를 이용하여 Mueller Industries가 위원회에 접촉해 옴으로써, 2001년 1월에 당해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다.

위원회가 행한 심사로, 참가기업이 동배관( 및 KME와 Wieland 그룹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동배관)에 대해서 생산량 및 시장점유율의 할당, 가격목표 및 그 상승, 그리고 그 밖의 상업적 조건의 설정을 통해서 경쟁을 피한다고 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코드명과 무명의 공항라운지에서의 회합을 이용한다고 한, 잘 형성된 고전적인 카르텔을 행한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목표는 고가격 수준의 국가에 있어서 고가격을 유지하는 것 - 가능하지 않다면 가격을 상승한다」며, 참가기업의 1개사가 1989년 9월 29일 취리히 「Airport Forum」에서 행해진 최초의 유럽 회합에서의 메모에 적었다. 그 장소에서 그들은 1개월 이내에 암스테르담 공항의 회의장에서 다시 회합을 가질 것에 동의하였다. 회합 장소에서 그들은 판매, 발주, 시장점유율 및 가격에 관한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이 위법한 협정의 준수상황을 감시하였다.

당해 카르텔은 3단계의 수준으로 조직되어 있고, 첫째로 가장 오래된 수준이 당초에는 KME, Boliden 사이에서 행해지고, 나중에 Trefimetaux, Europe Metalli 및 Wieland라는 기업이 참가했고, 소위 Sanco club(Sanco라는 고급스런 동배관의 브랜드명이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Outokumpu 및 IMI가 1년 후인 1989년 9월에, Mueller가 1997년에 가담하고, 이 3개 기업에 Wieland 및 KME(Trefimetaux 및 Europe Metalli라는 자회사도 포함)를 더하여, 소위 유럽의 생산자 「5대 그룹」이 완성되었다.

사실의 중대성, 위반기간, 기업의 상대적 규모 및 심사에 대한 협력의 상대적인 정도를 비추어 보아 위원회는 이하와 같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Boliden AB, Boliden Fabrication AB 및 Boliden Cuivre & Zinc S.A. : 3,260만 유로
- Halcor S.A. : 916만 유로
- HME Nederland BV : 449만 유로
- IMI plc, IMI Kynoch Ltd. 및 Yorkshire Copper Tube Ltd. : 4,498만 유로
- KM Europe Metal AG, Trefimetaux SA 및 Europe Metalli SpA : 6,708만 유로
- Mueller Industries, Inc., WTC Holding Company, Inc., Mueller Europe Ltd., DENO Holding Company, Inc. 및 DENO Acquisition EUR : 0유로
- Outokumpu Oyj 및 Outokumpu Copper Products OY : 3,614만 유로
- Wieland Werke AG, Austria Buntmetall AG 및 Buntmetall Amstetten Ges.m.b.H. : 2,784만 1,100유로
- Outokumpu, KME 그룹, Wieland 및 Halcor에 대한 제재금은 위반의 입증에 유용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에 따른 감액을 반영하였다. Outokumpu의 제재금 역시 Outokumpu가 1990년에 stainless 카르텔에서 경쟁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반영하였다.

2004. 9. 3. 유럽위원회 발표문

## 독일

### 연방카르텔청, 독일우편주식회사에 경고

연방카르텔청은 독일우편주식회사(Deutsche Post AG)가 우편물 분류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차별적 취급을 했다고 결론내리고,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명할 예정이다. 우편물 분류서비스에는 특히 100g 이하의 우편물을 분류하여 이를 독일우편주식회사(이하 Deutsche Post)의 분류센터로 보내는 업무가 포함된다.

Deutsche Post는 현재 대량의 우편물을 목적지별로 미리 분류하여 이를 자신의 분류센터로 보내는 대규모 기업들에게는 3~21%의 할인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경쟁사에 대해서는 그 우편물이 발신자가 동일인이 아닌 한, 이러한 할인혜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들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여 이를 통합·분류하고 100g 이하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Deutsche Post로 발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연방카르텔청은 Deutsche Post가 우편서비스를 하는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있으며, 동시에 주요 고객이 아닌 우편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판단

했다. 연방카르텔청장은 “Deutsche Post는 경쟁사가 처리하는 우편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소량의 우편물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자들에게는 경쟁상의 불이익을 주는 꼴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Deutsche Post는 독일경쟁법과 유럽법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 연방카르텔청은 Deutsche Post가 우편법상 인정된 독점적 사업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U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면, 독일 우편법이 100g 이하의 우편물에 대해서 Deutsche Post에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한, 이 법은 유럽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나 차별적 취급은 위법한 국내법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방카르텔청은 Deutsche Post에게 이러한 내용의 경고서한을 발송했으며, Deutsche Post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2004. 11. 3. 연방카르텔청

## 일본

### 공취위, 「휴대전화 번호이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 입장」 공표

휴대전화 이용자가 휴대전화 사업

자를 변경했을 경우에도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변경후의 휴대전화 사업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에 대해서 올해 5월의 총무성 가이드라인인 「휴대전화의 번호이동 도입에 관한 가이드라인」 근거로, 그 도입을 향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번호이동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 등에 대해 전기통신 사업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경우, 독점금지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취인위원회는 번호이동 도입시 및 도입 후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휴대전화 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번호이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 입장」을 작성하여 공표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0월 6일에 원안을 공표하고, 각 방면 관계자들의 의견을 넓게 구하여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공정취인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번호이동은 일반적으로는 휴대전화 등 이용자의 편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휴대전화 사업자간 공통된 경쟁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사업자 간 그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합의하

는 것 자체는 원칙으로 독점금지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번호이동의 도입시, 최소한의 필요 한 사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 사 이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그 것이 휴대전화 등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그 준수를 강제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전기통신사업자를 차별 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번호이동의 도입시 위 2의 사항에 대하여 체결되는 협의 및 상호결 정은 기존의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여기 서 결정된 사항이 신규 참가를 하 고자하는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불 리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4. 11. 1. 공정취인위원회

## 공취위, 카라카미관광 주식회사 에 대해 권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카라카미관광 주식회사(이하 카라카미관광)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 법)제14항(우월적지위의 남용)제1호 의 규정 위반으로 권고조치 했다.

카라카미관광은 홋카이도에 본사를 두고 관광호텔 등을 경영하는 여관업

에 종사하고 있다. 카라카미관광은 홋카이도 지역에서 경영하는 호텔에 있고,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식재, 일용 잡화품, 의료품 등의 제품 및 광고대리업무, 인재파견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납입 업자 등)에 대해,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미리 납입업자마다 매수를 정해 놓고 자신의 호텔 숙박권의 구입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만일 납입업자가 구입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도록 거듭 요구해왔다. 그리고 납입업자가 숙박권의 구입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숙박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숙박권을 판매해 왔다.

또한 납입업자들에게 참가비용을 받고 개최하는 숙박을 동반한 연회에 의 참가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 경우 참가인원도 미리 할당해 놓았다. 만일 납입업자가 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참가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여 연회에 참가시켜왔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납입업자들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자사의 종업원에게도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는 배제조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납입업자들과 거래의 담당자에게 독점금지법에 관한 연수 및 법무담당자에 의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카라카미관광이 공정취인위원회의 이러한 권고에 응낙하는 경우, 권고와 같은 취지의 심리판결을 하며, 반대로 이에 응낙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수속이 개시된다.

2004. 10. 28. 공정취인위원회

## 캐논 주식회사에 대한 독점금지 법 위반

공정취인위원회는 캐논 주식회사(이하 캐논)가 캐논제 칼라 레이저 프린트에 사용되는 토너 카트리지(이하 카트리지)에 IC태그를 탑재하고 IC태그에 탑재된 IC칩에 기록된 정보의 해석이나 간신을 곤란하게 하여, 해당 카트리지의 재생품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업자가 해당 카트리지의 재생품을 판매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어 조사를 해왔는데, 조사결과 현재까지는 재생업자가 재생품을 재생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심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IC태그란 IC칩과 안테나로 구성되 어 물품에 탑재되는 것이며, 그 중에 해당 물품의 식별 정보 그 외의 정보를 읽거나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생품이란 일반적으로 레이저 프린트 이용자로부터 재생 이용의 의뢰를 받아 회수된 사용이 끝난 카트리지로서, 분해·세정 및 소모부품을 교환한 뒤 토너를 충전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생업자란 사용이 끝난 카트리지를 회수하여 재생 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캐논은 레이저 프린트 및 그 카트리지의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며 일본 내 칼라 레이저 프린트의 시장에 있어 유력한 사업자이다. 그리고 카트리지에는 프린터 제조업자가 판매하는 이른바 순정품 외에 재생업자에 의해서 판매되는 재생품이 있는데, 컴퓨터 이용의 증대에 따라 레이저 프린트에 이용되는 카트리지의 수요도 확대되어 이용자의 카트리지의 재생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재생품의 시장 점유율은 흑백 레이저 프린트 시장에서 약 25%, 칼라 레이저 프린트 시장에서 약 4%이며,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생품의 가격이 순정품 가격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프린터의 경우 IC칩을 탑재하고 있는 카트리지에 해당 카트리지의 토너가 없어지는 상황이 데이터(이하 수명데이터)로 기록되도록 하여 해당 카트리지에 토너가 다시 충전되어도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업자는 통상 사용이 끝난 카트리지를 회수하여 그 수명데이터를 변경함으로써 초기 상태로 되돌려 프린터가 해당 카트리지를 신품으로 인식하도록 한 다음, 재생품을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캐논은 2002년과 2003년에 판매

를 개시한 칼라 레이저 프린트에 사용되는 카트리지에다가 프린터 본체의 손상 방지 및 순정품인 카트리지가 사용되었을 경우의 품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라고 칭하는 IC태그를 탑재하고 그 IC칩에 수명데이터를 기록하여, 토너가 없어지는 등 수명을 다한 카트리지가 장착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칼라 레이저 프린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왔다.

이 IC태그는 보안성이 뛰어나 재생업자가 IC칩의 수명데이터를 변경하여 초기 상태로 되돌려 재생품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IC태그가 탑재된 카트리지에 대해서는, IC칩의 수명데이터를 고쳐 쓰는 방법에 의해 재생품으로서 판매하고 있는 재생업자가 없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캐논이 해당 IC태그를 이용해 재생품의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 즉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제15항(경쟁자에 대한 거래방해)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온 것이다.

그리고 공정취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칼라 레이저 프린트에 사용되는 카트리지의 재생 품의 이용을 바라는 이용자에 대해 재생업자가 재생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상의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했다.

- 캐논은 칼라 레이저 프린트 본체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IC칩에 수명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어도 토너가 충전된 재생품을 해당 프린터에 장착했을 경우에 순정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해당 프린터 본체의 표시창에 메시지가 나타나지만 이용자가 필요한 조작을 하면 인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생업자가 IC칩의 수명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아도 카트리지를 재생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 점

- 재생품의 사용을 희망하는 이용들을 고려해, 재생품의 사용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① 재생업자단체에게 재생품이 장착된 프린터가 작동하는 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함

② 일부 프린터에서 재생품이 장착되었을 경우에는 색조정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캐논은 이를 수정하고, 그 원인이 되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한 점

그러나 공정취인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위해 레이저 프린트용 카트리지 거래에 있어서의 경쟁의 상황을 계속 감시하기로 했다.

2004. 10. 21. 공정취인위원회